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업무협약서(사업장)

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과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(이하 "사업장"이라 한다)은 2021년 「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」 시행에 필요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"진흥원" 「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」에 관한 사무를 "사업장"과 협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당사자의 책무) ① "진흥원"은 "사업장"이 「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"사업장"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"사업장"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의거 「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」을 성실히 수행하고, "진흥원"의 지도·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3조(협약 사업내용) "진흥원"이 "사업장"과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.

1. 사 업 명 : 「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」
2. 사업기간 : 2021. 6. ~ 9. (4개월, 단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)
3. 사업내용 :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
4. 인건비지원 : 1인당 최대 월 418,560원 지원

제4조(협약 기간) 본 사업의 협약기간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21. 10. 31.(정산기간 포함)까지로 한다.

제5조(사업비 지급) ① "진흥원"은 "사업장"에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협약체결과 근로계약을 완료한 후 "사업장"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비를 "사

업장" 에 지급한다.

② "진흥원" 은 사업의 종료, 중단 및 사업추진 "사업장" 의 문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와 제8조의 협약의 해지시에는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.

③ 사업비의 지급 절차·방법·정산 등은 「지방재정법」, 「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대전광역시 재무회계 규칙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사업비의 사용 등) ① "사업장" 은 사업비를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구분 사용하여야 하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.

② "사업장" 은 사업비를 관리·사용함에 있어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업비의 관리) ① "사업장" 은 지원금 관리 장부를 기록하고, 지원금 지출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② "사업장" 은 위법·부당하게 지출된 사업비는 신속히 환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) "진흥원" 은 "사업장" 이 본 협약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진도율이 부진하여 시정 명령하였으나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9조(사후정산 및 환수) ① "사업장" 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에 대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사업비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"진흥원"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"사업장" 이 사업비를 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 "진흥원" 은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.

③ "사업장" 은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"진흥원" 에 반납하여야 하며, 위법·부당하게 집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"진흥원" 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10조(제재) ① "진흥원" 은 "사업장" 이 협약을 위반하여 위법·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"사업장"이 타기관 보조금과 인건비 이중수급 시 환수 조치 및 이후 「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」 신청 불가하도록 한다.
③ 위법 여부는 "진흥원"의 판단에 따른다.

제11조(지도감독 및 보고) ① "진흥원"은 "사업장"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,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"사업장"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② "사업장"은 "진흥원"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사업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"진흥원"의 판단에 따른다.

본 협약은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,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,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"진흥원"과 "사업장"이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✓ 월 ✗ 일

(진흥원) 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**배 상 록** (인)
주 소 :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96

(사업장) 건강나눔 사회적협동조합 **김정현** (인)
주 소 : 대전 유성구 봉명로16 LH 11단지
관리동 사회적기업실